

외국인입학생규정

2004.03.01.제정 2007.03.01.일부개정 2009.09.01.일부개정 2021.12.01.폐지

<입학팀>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4조 제2항 및 「편입학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입학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 제2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9.1)

제 3 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로부터 4주이내로 한다.

제 4 조 (편입학)

1. 모집학년은 2, 3학년으로 한다.
2. 제2조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1학년과 2학년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제 5 조 (입학절차)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4. 기타 입학에 필요한 증명서
5.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에 입학허가서 및 초청장을 발급할 수 있다.

제 6 조 (전형방법) 지원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2009.9.1)

1. 서류전형 (개정 2009.9.1)

제 7 조 (등록금납부 등) 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한내에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고, 그 외 본 대학교에서 지시하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유학생은 학기제로 등록금을 납부하며, 학기당 등록금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3.1.)

제 8 조 (장학) 본 대학교 「장학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 9 조 (입학허가취소) 입학에 필요한 구비조건이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0 조 (기타) 기타 외국인 학생의 학사에 관련된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 외국인 입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7년 3월 1일 외국인유학생(신입생,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폐지한다.